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2. 2. 27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2월 7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2월 16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2. 2. 23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 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오승환 )

#### 가. 제안이유

- 급식심의위원회 및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마련하는 등 현행 급식지원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원활한 급식지원 체계를 갖추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제명변경 :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』를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』로 변경
-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용어정의(안 제2조)
- 급식경비 지원대상 기관의 지원신청서 제출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- 급식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조정 및 정족수 규정 신설(안 제6조)
  -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 단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

- 급식심의위원회 심의기능 신설(안 제6조의 2)
  - 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체계를 갖추
- 급식지원센터의 기능 신설(안 제7조제2항)
  -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마련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개발 및 교육지원, 식재료 공급·유통·사용의 지원체계를 갖추
- 기타 용어 정비 및 문구 수정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이 현 영)

- 이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함께 시작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서울시가 동참하고 2012. 1. 5일 서울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그간의 논란이 해소됨에 따라, 우리구 학교급식 지원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원활한 급식지원체계를 갖추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”에서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변경 함.
  - 안 제5조의2에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장은 급식경비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규정 신설함.
  - 안 제6조에 급식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“2년 단임”에서 “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”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위원회 정족수를 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,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” 한다는 규정 신설함.
  - 안 제6조의2에 급식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신설하여
    - 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
    - 급식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
    -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-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등을 심의하도록 함.
- 안 제7조제2호에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신설하여
  -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 조사
  -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과 범위 선정
  -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 및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
  - 식재료 유통 및 공급관리
  - 관할 교육청(교육지원청)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8조제3항에 지원대상 학교 등은 구청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.
- 검토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2012년 학교급식의 지원주체인 서울시교육청, 서울시, 자치구의 원만한 협의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하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
- 먼저 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신설됨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등 학교급식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며
- 또한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이 새로이 규정됨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보다 안전한 식재료가 유통되고 공급·관리되는 등 학교급식 지원체계가 보강 될 것으로 판단됨.
-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행 학교급식 체계가 보강되면 원활한 급식지원 체계를 갖추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.

- 그 밖에 부문은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'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것으로 법체제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06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2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급식심의위원회 및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마련하는 등 현행 급식지원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원활한 급식지원 체계를 갖추므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변경 :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』를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』로 변경
- 나.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용어정의 (안 제2조)
- 다. 급식경비 지원대상 기관의 지원신청서 제출 규정 신설 (안 제5조의2)
- 라. 급식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조정 및 정족수 규정 신설(안 제6조)
  -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 단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도모
- 마. 급식심의위원회 심의기능 신설(안 제6조의2)
  - 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체계를 갖추
- 바. 급식지원센터의 기능 신설(안 제7조제2항)
  -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을 마련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개발 및 교육 지원, 식재료 공급·유통·사용의 지원체계를 갖추
- 사. 기타 용어 정비 및 문구 수정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학교급식법
- 나. 예산조치 : 2012년 예산편성(2,481,645천원)

다.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(2012. 1. 12 ~ 2. 1)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학교 등 급식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”을 “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급식지원센터”란 급식에 대한 정책개발 및 교육을 지원하고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·유통·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수있다”를 “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친환경우수”를 “친환경 우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지원신청)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급식시설·설비의 위치와 규모
3.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 대상자 수
4.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
5.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시행 계획

## 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제6조제5항 본문 중 “2년 단임으로 하고”를 “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
2. 급식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
3.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
5. 그 밖에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

제7조의 제목 “(급식지원센터 설치)”를 “(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 중 “있으며, 관리·운영을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”를 “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 조사
2.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과 범위 선정
3.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 및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 조정 및 품목선정
4.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관리
5. 관할 교육청(교육지원청 포함)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
6.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

③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의 관리·운영을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

제8조제1항 중 “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우선”을 “맞게 지원금을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은 구청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급식법」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고, 급식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 및 영·유아의 <u>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학교 등 급식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제3조(자치단체의 임무) ①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<u>범위 내에서</u> 지원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지원방법) ① 구청장은 급식을 위하여 예산 또는 현물로 지원할 <u>수있</u></p>	<p>제명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건전한</u> <u>심신 발달에 기여함</u>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. “급식지원센터”란 급식에 대한 정책 개발 및 교육을 지원하고 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·유통·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.</u></p> <p>제3조(자치단체의 임무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지원방법) ①----- ----- <u>수 있다.</u></p>

다.

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4호의 친환경우수 식재료를 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지도 · 감독하여야 한다.

③ 급식지원 신청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6조(급식심의위원회 설치) ① ~ ④  
(생략)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과 구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⑥ (생략)

⑦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-----  
----- 친환경 우수  
-----  
-----.

<삭 제>

제5조의2(지원신청)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,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
2. 급식시설·설비의 위치와 규모
3.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 대상자 수
4.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
5.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시행 계획
6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급식심의위원회 설치) ① ~ ④  
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2년으로 하며  
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-----  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신 설>

제7조(급식지원센터 설치) 구청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관리·운영을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6조의2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
2. 급식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
3.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4.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
5. 그 밖에 급식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

제7조(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) ①

-----  
-----  
----- 있다.

②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 조사
2.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과 범위 선정
3.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 및 생산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 조정 및 품목선정
4. 식재료의 유통 및 공급관리
5. 관할 교육청(교육지원청 포함)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
6.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

③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의 관리·운영을 비영리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지원대상자의 의무) 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지급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제8조(지원대상자의 의무) ① -----  
-----  
----- 맞게 지원금을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지원대상 학교 등은 구청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